

「안양 자이 더 포레스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 일에 한국부동산원(「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자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통보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상자는 청약 신청일에 미접수로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 및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대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6층 5개동 총 483세대 중 일반분양 212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조합원 공급 229세대, 보류지 2세대, 임대 40세대 제외)
- 입주 예정 : 2026년 04월 (예정)
- 공 급 세 대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표기	주택공급 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49.9619	49A	49.9619	24.2939	74.2558	49.0689	123.3247	11
49.9834	49B	49.9834	24.0109	73.9943	49.0901	123.0844	15
49.9795	49C	49.9795	24.7318	74.7113	49.0862	123.7975	15
59.9871	59A	59.9871	23.0211	83.0082	58.9151	141.9233	95
59.9775	59B	59.9775	23.2578	83.2353	58.9056	142.1409	54
59.9707	59C	59.9707	22.8818	82.8525	58.8989	141.7514	20
73.9527	73B	73.9527	23.3617	97.3144	72.6311	169.9455	2
합 계							212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별 배정세대

구분	49A		59A		59B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장애인(경기도)	1	5	2	10	1	5	4	20

2. 분양 일정(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9.07.(목)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xi.co.kr/YYH)
견본주택 오픈	2023.09.08.(금) 예정	안양 자이 더 포레스트 견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20-9)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청약 원칙]	2023.09.18.(월) 예정 (09: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3.09.26.(화)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또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 ②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 청약(청약Home)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 단, 견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대표번호로 별도 문의)

3. 신청자격

■ 기본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 및 통보된 분

추천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 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대상자 :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 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거주자에게만 공급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 관리됩니다.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제외)

■ 입주자 저축 구비 여부

구 분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등을 시행일 이후 매매등으로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가능) -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등은 제외)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내에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청약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층별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5. 투시도



6. 위치 안내

